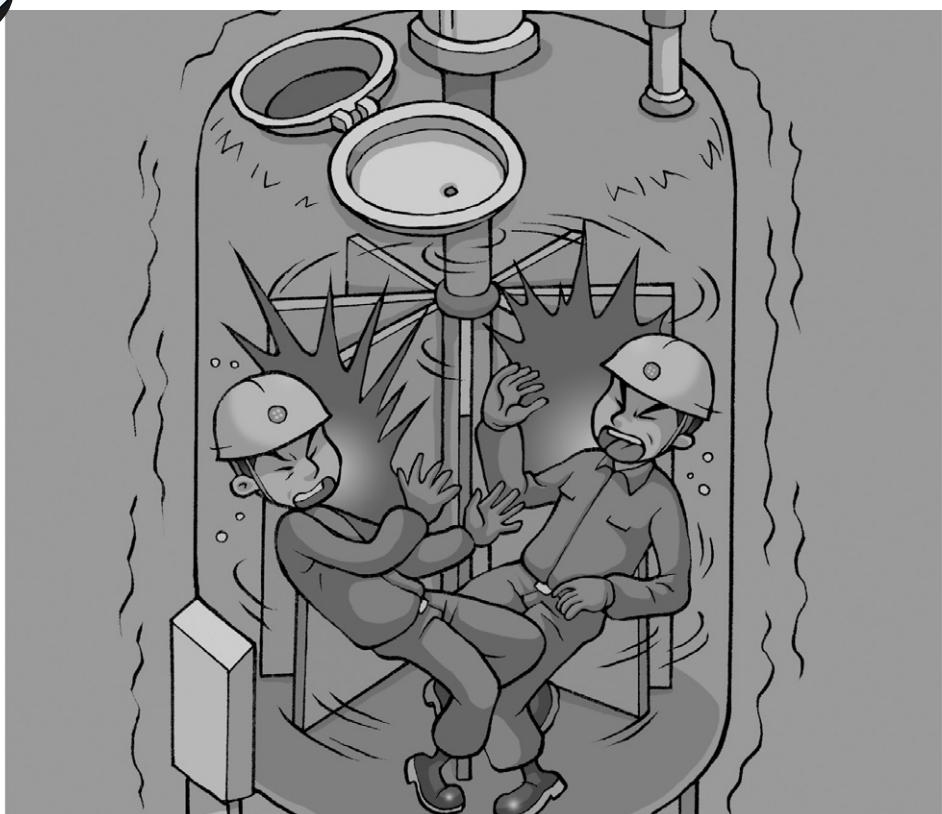


## 협착사고

# 교반기 내부 작업 중 교반날에 협착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작업장에서 교반기 내부에 부식방지를 위한 고무라이닝 부착작업 중 교반기 내부에 근로자가 있는지 모르고, 다른 근로자가 교반기를 가동시켜 회전하는 교반날에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 미설치
- 나. 작업 중 표지판 미부착
- 다. 전 근로자에게 정비작업 미공지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수리 · 점검 · 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

설비의 수리 · 점검 · 정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설비의 조작반에 “작업중” 표지판을 부착하고, 설비를 가동시키는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.

나. 수리 · 점검 · 정비 작업 사항 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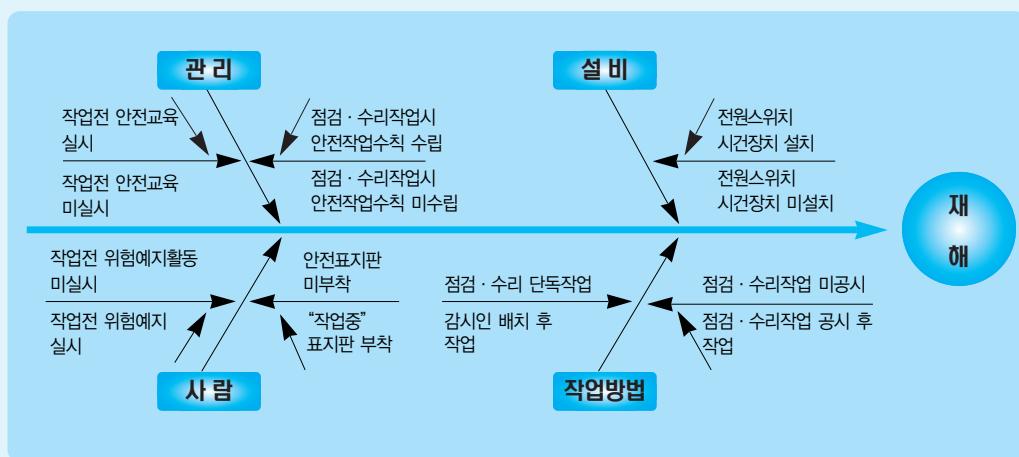
용기 내부 등 작업자의 위치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다른 근로자의 설비 가동을 예방하여야 함.

다. 안전감시인 배치

용기 내부 등 설비를 수리 · 점검 · 정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감시인을 배치한 후 작업토록 함.

### 4. 법 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폭발사고

# 맨홀 덮개 덮는 순간 회분식 반응기 내부에서 폭발한 재해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페인트 첨가제 생산라인에서 회분식 반응기 상부 맨홀을 열고 고체 원료를 투입한 후 용제인 톨루엔을 배관을 통해 투입하면서 맨홀 덮개를 닫는 순간 반응기 내부의 톨루엔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면서 맨홀 덮개가 재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여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덮개 개방상태에서 인화성 물질 투입
- 나. 인화성 물질 투입 시 낙차에 의해 정전기 발생
- 다. 인화성 물질 투입 시 안전수칙 미준수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원료투입 작업방법의 개선

인화성 물질(톨루엔)을 투입할 때는 노즐과 차단밸브를 별도로 설치하고 깔때기를 이용하는 등 맨홀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투입되도록 작업절차서 및 작업방법 개선이 요구됨.

#### 나. 맨홀 덮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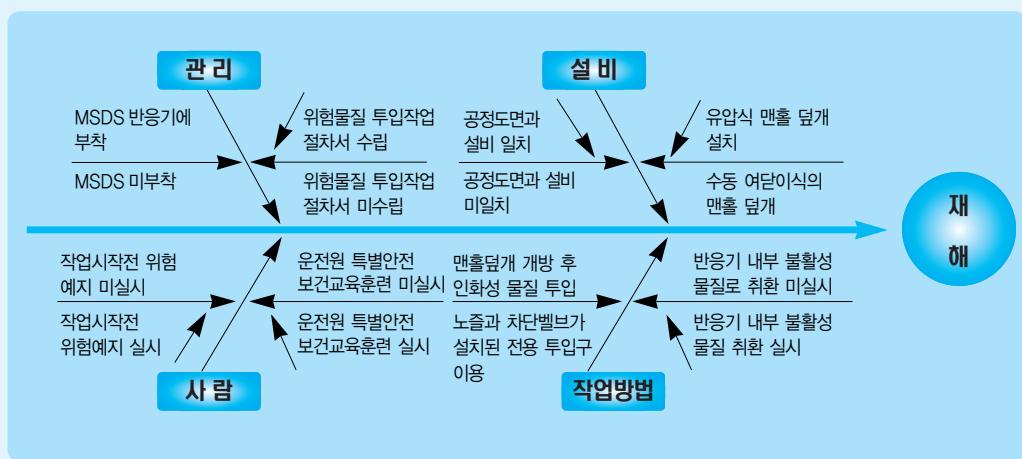
맨홀 덮개를 유압식으로 개선하여 작업자가 직접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며, 자동 스위치는 맨홀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폭형으로 설치 함.

#### 다. 교육훈련 강화

설비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에게는 운전대상 설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과 화재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보건교육훈련을 강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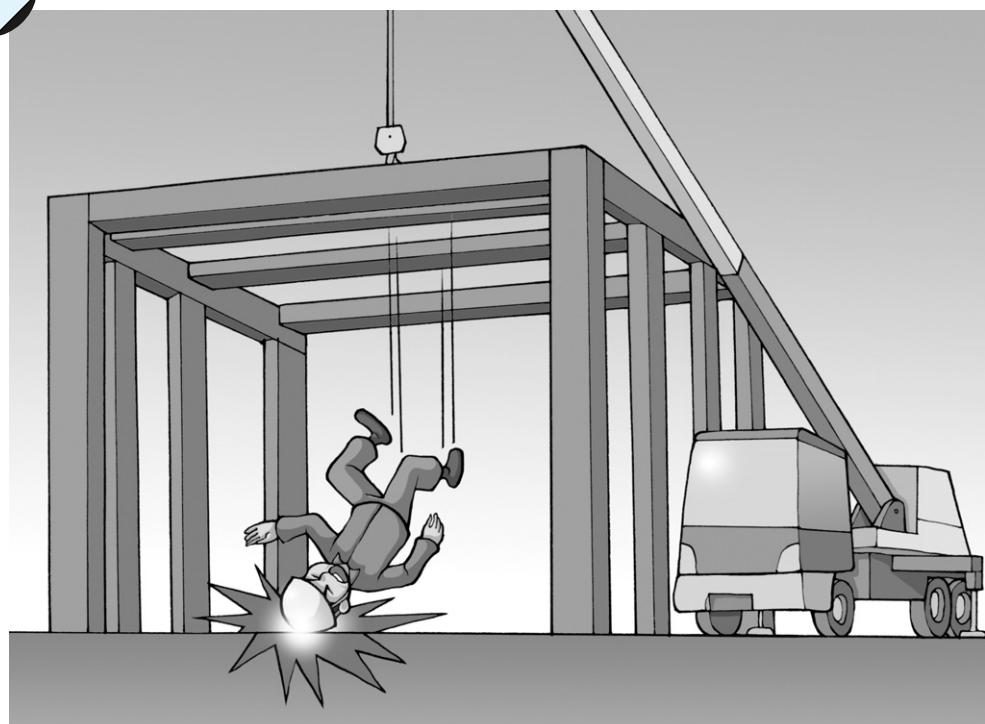
### 4. 법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추락사고

# 철골거더 위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한 재해



## 1. 재해발생경위

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지붕층 철골 거더를 기둥의 브라켓과 가체결 한 후, 이동식크레인의 후크에 탑승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옮겨가기 위해 철골거더 위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인 지상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가설통로 미설치
- 나. 안전보호구 미착용
- 다.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미설치



### 3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이동통로에 가설통로 설치

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통로를 설치 함.

#### 나.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 설치

안전통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안전대를 걸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(수평 구명줄)를 설치하여야 함.

#### 다.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

2m 이상의 고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, 안전대 걸이용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여야 함.

### 4. 법 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